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3556
----------	------

제안년월일 : 2026년 3월 6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윤기섭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73호), 최호정 의원 외 2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90호), 성흠제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96호)을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2026.3.6.)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윤기섭 의원 외 19명, 최호정 의원 외 26명, 성흠제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공영주차장 위탁대상자에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

체육회를 추가하되 시립체육시설에 설치된 공영주차장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택시운수종사자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무료주차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증가에 따른 화재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차장 관리자의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조치 및 사고 대응 체계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바,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택시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화장실 이용 시 공영주차장 30분 이내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1항제15호다목).
- 나. 주차장 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9조의2제5항 신설).
- 다. 주차장 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도록 함 (안 제9조의2제6항 신설).
-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단, 시립체육시설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한함)를 신설함. (안 제10조제1항제6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5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단,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제9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차장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조치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주차장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단, 시립체육시설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한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 또는 바로 녹색결제시스템으로 각 호의 자격이 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p> <p>1. ~ 14. (생략)</p> <p>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가.·나. (생략)</p> <p><신설></p> <p style="padding-left: 2em;">다. (생략)</p>	<p>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 ----- ----- ----- ----- ----- ----- ----- -----.</p> <p>1. ~ 14. (현행과 같음)</p> <p>15.----- ----- -----</p> <p style="padding-left: 2em;">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 운송사업 차량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단,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라. (현행 다목과 같음)</p>

②·③ (생략)

제9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 ④ (생략)

<신설>

<신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신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차장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주차장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①-----

-.

1.~5. (현행과 같음)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단, 시립체육시설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한함)

②~③ (현행과 같음)